|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공무역하의 수입 소모성 자재 관리 규범화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공고2016년제67호  가공무역하의 수입소모성 자재(이하 “소모성 자재”이라 약칭)의 관리를 규범화 및 통일화하고 감독관리효능을 제고시키기 위해, 유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본 공고에서 일컫는 소모성 자재는 가공무역기업이 수출완제품 가공을 위해 수입하고, 동시에 수출완제품 가공에 필요하고 직접적으로 생산과정에 사용되나 완전하게 완제품에 물화되지 않은 자재를 의미한다. 물화(물질의 변화)란 물리 또는 화학방식으로 자재를 완제품에 존속시키고, 동시에 상품의 기본특성을 구성하도록 하는 전환과정을 의미한다.  2. 해관은 소모성 자재에 대해 보세방식에 따라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가공무역기업이 소모성 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업유형 및 무역방식(진료가공, 내료가공), 단독수입 신고여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모성 자재상품이 동태적 조정의 원인으로 인해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목록에 포함될 경우,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으로 관리를 진행하고, 보세감독관리를 실행하지 않는다.  소모성 자재 또는 그 완제품을 내수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해관은 법에 의거하여 소모성 자재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고, 또한 납세유예이자를 추가 징수한다. 소모성 자재가 수입허가증 관리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은 내수 판매시 수입허가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이하의 상품은 가공무역 소모성 자재로 보세방식의 감독관리를 진행하지 않는다; 가공무역기업 생산설비, 공구의 쉽게 손상되는 부품, 예를 들어 드릴 비트, 연삭기, 절삭공구 날, 연마공구 등; 쉽게 소모되는 물품, 예를 들어 기계유 및 윤활유, 인쇄용 필름 및 PS판 등; 검측물질, 예를 들어 검측종이, 검측테이프, 검측디스크, 검측바늘 등; 안전보호용품, 예를 들어 작업복, 모자, 장갑 등; 회로기판용을 인쇄∙제작하는 드라이 필름 및 골프공과 비행기 엔진날개용 모형을 생산하는데 수입이 필요한 연한금속, 납, 내화재료 등이다.  4. 가공무역으로 수입한 자재가 동시에 아래 조건에 부합할 경우, 소모성 자재 관리에 포함시키지 않고, 기업은 보세자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관수속을 처리한다.  4.1 자재가 가공과정 중 물리변화 또는 화학반응 통해 완제품 중에 존재하거나 전환된 것  4.2 자재가 완제품 중 존재하거나 또는 전환된 양이 완제품 성능을 유지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구성부분이며, 잔류물이 아닐 것.  5. 기업이 보세수입한 소모성 자재를 신고할 경우, <가공무역기업 경영상황과 생산능력 증명> 문건의 수입자재란에 이를 열거하여야 한다. 기업이 수책(장부) 개설(변경)수속을 할 경우, 주관 해관에 <가공무역하의 수입 소모성자재 신고표>(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이 완전하여야 한다. 만약 해관이 필요로 할 경우, 기업이 아울러 아래 보충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1 소모성 자재의 속성과 용도설명  5.2 가공과정 중 소모성 자재의 화학반응 또는 물리변화원리, 화학반응식, 사용량 및 완제품과의 매칭관계 등에 대한 서면자료  5.3 해관이 제출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기타증명문건과 자료  6. 소모성 자재는 상응하는 가공생산과정의 수입자재, 수출완제품과 동일한 수책(장부)에 포함시켜 관리하여야 한다. 기업은 수책(장부) 개설(변경) 단계에서 요구에 따라 해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업이 소모성 자재를 신고할 경우 표시를 하여야 하며, “상품명칭”란 첫머리에 “[소(消)]”라는 주석을 달아 밝힌다 (주: 중괄호는 반각부호); “단모(단위소모량)/정모(순소모량)”항목에는 사실대로 소모량을 신고한다.  소모성 자재는 기타 보세자재와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고, 섞지 말아야 한다.  7. 소모성 자재의 관리는 사실대로 신고하고, 실제에 근거하여 핵소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기업은 생산과정에서 실제로 심사 확정된 소모량을 결합시켜야 하며, 또한 가공무역 수책(장부)의 유관 규정에서 요구하는 핵소 신고기한 내에 세관에 핵소를 신고해야 한다.  해관이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현지조사 등 방식을 통해 기업이 신고한 데이터에 대해 심사∙대조 및 검증을 진행할 수 있으며, 기업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해관요구에 따라 관련 증명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업은 소모성 자재의 후속처리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의 가공무역 자투리, 잔여자재, 불량품, 부산물과 피해를 당한 보세화물에 관한 관리방법>(해관총서령제111호 공표, 해관총서령제218호수정)유관 관리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8. 해관 특수감독관리구역 내 기업이 소모성 자재를 수입할 경우 보세감독관리를 실행한다. 상술한 자재 또는 그 완제품이 경내의 구외(區外) 지역으로 판매될 경우, 기업은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 수속을 처리하여야 하며, 수입허가증 관리와 관련되는 경우 유관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본 공고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관총서공고 2011년 제2호는 본 공고 시행일부터 집행을 중단한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첨부: 가공무역하의 수입 소모성 자재 신고표  해관총서  2016년11월24일  첨부:  가공무역하의 수입 소모성 자재 신고표   |  |  |  |  | | --- | --- | --- | --- | | 기업명칭 |  | | | | 기업일련번호 |  | 주관 해관 |  | | 업종 |  | 연락인 및 연락처 |  | | 기업주소 |  | | | | 수/장부번호 |  | 상품유형 |  | | 상품명칭 |  | 상품일련번호 |  | | 규격사이즈  (성분) |  | 물질변화여부, 생산필수품, 안정적 사용여부 |  | | 공정흐름 |  | | | | 작용효과 |  | | | | 기업설명  (날인) |  | | | | 주관해관의견 |  | | | | 비고 |  | | | |  | **关于规范加工贸易项下进口消耗性物料管理的公告**  海关总署公告2016年第67号    　　为规范、统一对加工贸易项下进口消耗性物料（以下简称“消耗性物料”）的管理，提高监管效能，现就有关事项公告如下：  　　一、本公告所称消耗性物料，是指加工贸易企业为加工出口成品而进口，且为加工出口成品所必需，直接用于生产过程，但又完全不物化于成品中的物料。物化是指料件通过物理或化学的方式存在于成品中并构成商品基本特性的转化过程。  　　二、海关对消耗性物料按照保税方式进行监管。加工贸易企业进口消耗性物料，不受企业性质、贸易方式（进料加工、来料加工）、是否单独申报进口的限制。  　　消耗性物料商品如因动态调整被增列入加工贸易禁止类商品目录的，按加工贸易禁止类商品进行管理，不实行保税监管。  　　消耗性物料或其制成品转为内销的，海关对消耗性物料依法征收税款并且加征缓税利息。消耗性物料属于进口许可证件管理的，企业在内销时应提交进口许可证件。  　　三、以下商品不按加工贸易消耗性物料以保税方式进行监管：加工贸易企业生产设备、工具的易损件，如钻头、钻嘴、砂轮、刀片、磨具等；易耗品，如机油、润滑油，印刷用的菲林、PS版等；检测物料，如检测纸、检测带、检测光盘、检测针等；劳保防护用品，如工作衣、帽、手套等；印制电路板用的干膜、生产高尔夫球头和飞机发动机叶片用模具所需进口的软金属、蜡、耐火材料等。  四、加工贸易项下进口料件同时符合以下条件的，不纳入消耗性物料管理，企业按照保税料件的相关规定办理有关手续：  　　（一）料件在加工过程中通过物理变化或化学反应存在或转化到成品中；  　　（二）料件存在或转化到成品中的量是保持成品性能不可缺少的组成成分，而非残留物。  　　五、企业申报保税进口的消耗性物料，应当在《加工贸易企业经营状况和生产能力证明》进口料件中予以列明。企业在办理手（账）册设立（变更）手续时，应当向主管海关提交《加工贸易项下进口消耗性物料申报表》（详见附件），申报内容应当完整。如海关需要，企业还应当提交以下补充材料：  　　（一）消耗性物料的属性和用途说明；  　　（二）消耗性物料在加工过程中的化学反应或物理变化原理、化学反应式、耗用量以及与成品的匹配关系等书面材料；  　　（三）海关认为需要提交的其他证明文件和材料。  　　六、消耗性物料应当与相应加工生产过程的进口料件、出口成品纳入同一手（账）册管理。企业应在手（账）册设立（变更）环节按要求向海关申报。企业在申报消耗性物料时应当进行标识，在“商品名称”栏首字节起注明“[消]”（注：中括号为半角字符）；在“单耗/净耗”栏目内如实申报耗用量。  　　消耗性物料应当与其他保税料件分项申报，不得归并。  　　七、消耗性物料的管理遵循如实申报、据实核销的原则。  　　企业应当结合生产实际核定耗用量并按加工贸易手（账）册有关规定要求的报核时间完成向海关报核。  　　海关认为有必要时可通过实地核查等方式对企业所申报数据进行核对、验证，企业应当积极配合并按海关要求提供相关证明材料。  　　企业对消耗性物料的后续处置参照《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加工贸易边角料、剩余料件、残次品、副产品和受灾保税货物的管理办法》（海关总署令第111号公布，海关总署令第218号修订）有关管理规定办理。  　　八、海关特殊监管区域内企业进口消耗性物料，实行保税监管。上述物料或其制成品销往境内区外，企业应当按规定缴纳税款并办理进口手续，涉及进口许可证件管理的应当提交有关证件。  　　九、本公告自2017年1月1日起施行。海关总署公告2011年第2号自本公告施行之日起停止执行。  　　特此公告。  附件：加工贸易项下进口消耗性物料申报表  海关总署  　　2016年11月24日    附件：  加工贸易项下进口消耗性物料申报表   |  |  |  |  | | --- | --- | --- | --- | | 企业名称 |  | | | | 企业编码 |  | 主管海关 |  | | 行业 |  | 联系人及联系电话 |  | | 企业地址 |  | | | | 手/账册号 |  | 商品类别 |  | | 商品名称 |  | 商品编码 |  | | 规格型号  （成份） |  | 是否物化、生产必需、耗用是否稳定 |  | | 工序流程 |  | | | | 作用效果 |  | | | | 企业说明（盖章） |  | | | | 主管海关意见 |  | | | | 备注 |  | | | |